

주제	특수불법행위-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사례 발표 자료
요약	<p>특수불법행위 중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관련 발표를 위한 자료입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건 및 판결 사례를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흐름을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에 제시했으니 이를 참고하여 발표를 준비하면 됩니다.</p> <p>해당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서 '책임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인 감독 의무를 다한다는 것의 의미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면 됩니다.</p> <p><발표 흐름 제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 2.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한 설명(책임 면제 조건도 함께) 3.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관련 사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대상이 어떤 이유(나이 등)로 책임 무능력자인지 제시합니다.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부모가 감독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 부모가 감독의무를 이행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4. 감독의무 이행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건에 따라 감독자의 감독 의무 이행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감독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책임 능력 >

-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법률상 책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 능력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어린아이나 심신 상실자 등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본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단,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자료 1. 프로게이머 등 유명인 대상 악플, 징역 2년 실행까지

악플을 단 사람이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가능하다

만약 미성년자가 악플을 달았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년보호처분에는 소년을 소년보호기관에 위탁하는 감호위탁처분, 소년을 보호관찰소에 보내는 보호관찰처분, 소년원에 보내는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초범이고 악플이 1개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즉결심판에 의해 2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란 예를 들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 댓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즉결심판이란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벌금을 선고하는 절차이며, 즉결심판에 의해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 이에 불복하지 않는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플 수위가 높거나 악플 수가 많다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과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즉결심판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초범인 미성년자는 악플을 달아도 형사상 선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인데요, 그런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책임능력이란 본인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알다) 능력을 말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민사상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책임무능력자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고, 책임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SNS

를 통한 모욕 사건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책임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SNS에 모욕적인 글을 공개할 때에는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예측할 정도의 판단능력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악플러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를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의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초등학생인 자녀의 보호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악플을 단 미성년자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어서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가 자녀 행위에 대해 항상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과 손해 발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을 이용해 악플을 달았다면, 부모는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악플러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부모도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례도 있는데, 이 판례는 '미성년자가 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행실이 불량한 적도 없어서 자녀의 비행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플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액수는 악플 내용과 수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 괴롭힌 경우에는 위자료 1,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경우도 있죠.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큰 죄의식 없이 악플을 달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민사소송까지 당했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경찰서에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출석해야 하고, 민사 재판에서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부모가 출석해야 합니다.

<자료 요약>

해당 자료에서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민사소송 관련 내용에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부모의 감독의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을 이용했다는 조건이나 경제적인 의존도, 미성년자이 평소 행실로 인한 비행 행위 예견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09949>

자료 2. 엄마 몰래 아이가 훔쳐온 장난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사건>

5살 아들 병호와 마트에 간 아영.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병호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댁니다. 하지만 아영은 장난감은 집에 많다며 거절을 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병호가 마트에서 사달라고 조르던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었던 병호가 몰래 숨겨서 가져온 것이었죠.**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아영은 다음날 장난감을 돌려주러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장난감 값을 지불하려 했으나, 마트 사장은 회사 규칙상 물건 절도 시 10배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장은 병호가 하나 남아있던 장난감을 훔쳐가는 바람에 물건을 팔지 못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아영은 사장의 말대로 장난감 값의 10배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Q1. 병호에게 취해질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병호에게 취해질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인 줄 알면서 이를 절취한다는 인식 및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5살에 불과한 병호에게 위와 같은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병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만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아영은 병호를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요?

아영은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은 자기책임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록 병호가 아들이지만 법률적으로 타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병호가 장난감을 훔치지 못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영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 아영은 병호가 가지고 온 장난감의 값을 치르지 않았으므로 마트는 병호나 아영에게 **장난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병호는 5세에 불과하여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영이 책임무능력자인 병호의 감독자로서 병호의 불법행위에 대**

하여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 요약>

해당 자료에서는 절도 행위를 한 아동의 부모가 질 수 있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다룹니다. 형사적으로는 자기 책임의 원칙 때문에 부모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37>

자료 3. 미성년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

미성년자가 P2P를 통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한 경우, 그 부모들은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인터넷 망의 확산, P2P, 웹하드 등의 출현으로 불법저작물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고, 그 수입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챙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작권자의 단속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저작물을 단속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불법저작물이 공유된 IP 등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저작권자는 경고장을 보내 불법저작물의 즉각적인 공유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 불법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불법저작물을 공유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여서 수입도 없고 지불능력도 없는 경우, 저작권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불법저작물 공유자가 14세 이상이어서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자는 공유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서 그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이나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저작물 공유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고소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지 않다.

한편 우리 민법은 민사상 책임무능력자(대략 13세 이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모가 자녀 대신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되(제755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755조 제1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 의하면, 불법저작물 공유자가 13세 이하인 경우에 불법저작물 공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부모가 대신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모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법저작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 어느 정도의 감독의무를 다하여야만 저작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 설정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 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Bundesgerichtshof Urteil vom 15.November 2012 - IZR/12 - Morpheus).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경, 저작권자는 A의 아들 B(13세)가 P2P 프로그램인 Morpheus와 Bearshare를 이용하여 1,200개의 음악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한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 의하여 밝혀지자, A에게 공유중지, 손해배상, 비용배상 등을 담은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A는 B와 더불어 음악파일 불법 공유 사실을 인정하여 더 이상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손해배상이나 비용배상은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저작권자는 13세인 B 대신에 그 보호자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 민법(BGB) 제832조 제1항은 우리 민법 제755조 제1항과 유사하기에 이러한 소송이 가능하다.

제1심법원(LG Kln Urteil vom 30.Mrz 2011 - 28 O 716/10) 및 항소심법원(OLG Kln - Urteil vom 23.Mrz 2012 - 6 U 67/11)은 A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이 A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근거는 2010년 3월 12일 있었던 그 유명한 'Summer of Our Lives(Sommer unsere Lebens)' 판결이다.

'Summer of Our Lives' 판결은 독일 대법원 판결(Urteil vom 12. Mai 2010 I ZR 121/08 Sommer unseres Lebens)로서, 그 내용의 요지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와이파이 초기 설정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아, 제3자가 용이하게 위 와이파이 서비스(W-LAN)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와이파이 제공자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여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시켰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였다)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제공한 이상, 일응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의 판결을 깨고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인터넷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부모의 저작권 침해 감독의무의 기준에 대하여 "부모들은 13세 아이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불법적인 인터넷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한 것으로 그들의 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아이들의 컴퓨터 검색, 불법적인 서비스나 IP 차단 등까지 이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획득하였다면, 부모들은 모니터링, 검색, 차단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존의 `Summer of Our Lives` 판결에 따른다면, 부모들은 낮에는 방화벽을 설정하고 밤에는 컴퓨터의 디지털포렌식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부모들의 의무는 크게 경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에 있어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에서 기업의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보다 그 감독의무 기준이 낮은 문제점도 있지만, 컴퓨터가 자녀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감독의무가 강화된다면, 컴퓨터의 보급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청소년들의 IT 능력고양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하다.

<자료 요약>

해당 자료는 미성년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한 경우, 즉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서 부모가 감독자 책임을 지지만, 부모의 감독 의무의 기준에 대해 논하며 독일의 판례를 제시합니다. 독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인터넷 사용을 제공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대법원에서 불법적 인터넷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제시했습니다.

출처: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10402019919734022